

등록 후 다음으로 반환:

_____ [등기 기록을 위해 이 선 위는 비워두십시오] _____

담보대출증서

본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본 문서에서 복수의 섹션에 사용된 용어들은 아래 정의되어 있으며, 기타 용어들은 섹션 3, 4, 10, 11, 12, 16, 19, 24, 25 그리고 “채무자로부터 대출업체로의, 본 부동산에 대한 권한의 이전” 및 “본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의 단어 사용에 관한 일부 규칙은 섹션 17 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A) “채무자”의 이름은 _____이며, 현재 거주지는 _____입니다. 채무자는 본 담보문서의 저당권설정자이며, “채무자” 또는 “본인”이나 “나”로 칭하며, 한 명을 초과하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단수 표현을 사용합니다.

(B) “대출업체”의 이름은 _____입니다. 대출업체는 법에 의거하여 조직되고 존재하는 _____입니다. 대출업체 주소는 _____입니다. 대출업체는 본 담보문서에 따른 저당권자입니다. “대출업체”라는 용어에는 대출업체의 승계인 및 양수인이 포함됩니다.

관련 문서

(C) “어음”이란 ____ 년 ____ 월 ____ 일자에 작성됐으며 관련 법적 채무를 지는 각 채무자가 서명한 약속어음으로써, (i) 채무자가 서면에 직접 서명한 종이 문서 또는 (ii) UETA 또는 E-SIGN 에 따라 채무자가 선택한 전자서명이 이뤄진 전자 문서를 의미합니다. 어음은 서명한 각 채무자가 대출업체에 _____ 달러(\$ _____)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어음에 서명한 각 채무자는 해당 대출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여 ____ 년 ____ 월 ____ 일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D) “특약”이란 채무자가 서명한 본 담보문서의 모든 특약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든 특약은 본 담보문서에 포함되며 그 일부로 간주됩니다. 채무자는 다음 특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특약에 체크]

- 변동금리 특약 콘도 특약 기타[상세 기재할 것] _____
 공동주택 특약 계획단위개발 특약
 두번째 주택 특약

(E) “담보문서”란 ____ 년 ____ 월 ____ 일자의 본 문서와 본 문서의 모든 특약을 통칭합니다.

추가 정의

(F) “준거법”이란 연방, 주, 지방에서 지배력을 지닌 모든 관련 법령, 규정, 조례, 행정규칙, 행정명령(법적 효력을 가진 경우) 및 최종적이고 항소 불가능한 모든 관련 법정 의견을 의미합니다.

(G) “공동주거 관리 비용, 수수료, 부과금”이란 콘도미니엄 협회, 주택소유주 협회, 기타 유사 단체가 채무자 또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하는 모든 비용, 수수료, 부과금, 기타 요금을 의미합니다.

(H) “수용”이란 수용권에 따른 정부기관의 부동산 수용을 의미합니다.

(I) “채무불이행”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정기상환금 또는 본 담보문서에서 담보하는 기타 금액을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은 상황, (ii) 본 담보문서의 진술, 보증, 약정, 의무, 합의 사항의 위반, (iii)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채무자의 인지 또는 동의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섹션 8 에 기술된 바와 같이 대출과 관련하여 중대한 뉴욕--단독주택--패니메이(연방 저당권 협회)/프레디맥 통일문서

양식 3033k 07/2021

2/33 페이지

허위, 오도 또는 부정확한 정보나 진술을 대출업체에 제공한 경우 또는 (iv) 섹션 10(e)에 기술된 조치 또는 절차 등을 의미합니다.

(J) “전자자금이체”란 수표, 환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종이 증서를 통하지 않는 자금 이체를 의미합니다. 전자자금이체 시 전자 단말, 전화 장치, 컴퓨터, 자기 테이프를 통해 금융기관에 계좌 입출금을 요청하거나, 지시하거나, 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용어에는 POS 송금, ATM 기기 거래, 전화 또는 해당 금융 기관과 통신할 수 있는 기타 전자 장치에서 시작된 이체, 전신송금, ACH 송금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K) “전자서명”이란 UETA 또는 E-SIGN 에서 정의하는 “전자서명”을 의미합니다.

(L) “E-SIGN”이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국내외상거래전자서명법(15 USC § 7001 *이하 참조*)을 의미하고, 같은 사안에 적용되는 추가 또는 후속법을 포함합니다.

(M) “에스크로 아이템”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또는 저당권이 본 담보문서보다 우선할 수 있는 세금, 부과금 및 기타 항목, (ii) 부동산에 대한 토지 임차권 납부금 또는 토지 임대료(있는 경우), (iii) 섹션 5 에 따라 대출업체가 요구하는 모든 보험에 대한 보험료, (iv) 담보대출 보험료(있는 경우) 또는 섹션 11 의 조항에 따라 담보대출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신 채무자가 대출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 및 (v) 공동주거 관리 비용, 수수료, 부과금(대출업체가 대출 클로징 시점부터 또는 대출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에스크로를 요구하는 경우).

(N) “대출”이란 어음으로 입증되는 채무에 어음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이자, 기타 중도상환 수수료, 비용, 지출, 연체료를 더한 것 그리고 본 담보문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의 총합에 이자를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O) “대출 관리회사”란 채무자의 정기상환 및 채무자가 지불하는 기타 납부금을 수령할 계약상의 권리를 가진 회사로, 대출업체를 대신하여 대출을 관리합니다. 대출 관리회사는 하청 관리회사(대출 관리회사를 대신하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P) “기타 기부금”이란 다음에 대해 제 3 자가 지급한 모든 금전 또는 기타 유가물(섹션 5 에 적힌 보장범위에 따라 지급된 보험 수익금 제외)을 의미합니다. (i) 부동산의 훼손 또는 멸실, (ii)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유상수용 또는 기타 수용, (iii) 유상수용을 대신하는 물건행위 또는 (iv) 부동산의 가치나 상태에 대한 허위진술 또는 누락 등에 대한 배상, 합의,

손해배상 또는 제 3자가 지급한 수익금(섹션 5에 적힌 보장범위에 따라 지급된 보험 수익금 제외)을 의미합니다.

(Q) “**담보대출 보험**”이란 대출의 체납 또는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대출업체를 보호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R) “**부분상환금**”이란 정기상환금 전체 금액보다 적은 납부금으로, 어음에서 허용하는 자발적 중도상환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 “**정기상환금**”이란 (i) 어음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ii) 섹션 3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정해진 정기적 일정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T) “**사람**”이란 자연인, 기관, 정부당국, 또는 기타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U)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설명”에 기술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V) “**임대료**”란 채무자 이외의 당사자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 사용 또는 점거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수취했거나 수취할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V) “**RESPA**”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부동산결제절차법(12 USC § 2601 *이하 참조*) 및 그 시행규정인 규정 X(12 CFR Part 1024)를 의미하고, 같은 사안에 적용되는 추가 또는 후속 연방법 또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담보문서에서 언급하는 “RESPA”는 “연방 관련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 및 제약사항을 가리키며, 이는 대출이 RESPA에 따른 “연방 관련 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X) “**채무자 지분 승계인**”이란 부동산의 권원을 득한 당사자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당사자가 어음 또는 본 담보문서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를 모두 인수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Y) “**담보 총액**”이란 아래 “채무자로부터 대출업체로의, 본 부동산에 대한 권한의 이전”이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서술한 액수의 미납 잔액을 의미합니다.

(Z) “**UETA**”란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권에서 제정됐으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통일전자거래법을 의미하고, 같은 사안에 적용되는 추가 또는 후속법을 포함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대출업체로의, 본 부동산에 대한 권한의 이전

본인은 대출의 상환 그리고 본 담보문서 및 어음에 따른 약속 및 합의의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본 부동산 전체를 대출업체에 저당 설정, 부여 및 이전합니다. 즉 본인은 본 담보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담보문서에 명시된 권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증서를 보유한 대출업체에 준거법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대출업체에 부여하기로 합니다. 또한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대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을 대출업체에 부여하기로 합니다.

- (A) 어음으로 증명되는 부채의 전부나 일부 그리고 이자, 조기상환 수수료, 연체수수가 어음에 따른 기일까지 지불되지 않는 경우.
- (B) 본인이 본 담보문서에 따라 기일이 도래한 금액 및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본 부동산의 가치 및 본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업체가 섹션 9에 의거하여 지출하는 모든 금액 포함).
- (C) 본인이 본 담보문서 및 어음에서의 본인의 기타 약속 및 합의를 지키지 못하고, 대출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위 (A), (B), (C)에 따른 금액은 "담보 총액"이 됩니다.

본 부동산에 대한 설명

본인은 아래 (A) ~ (G)에 서술된 본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대출업체에 부여합니다.

(A) 다음 장소에 위치한 본 부동산: _____,

[상세 주소]

_____, New York _____ ("부동산 주소").

[도시, 소도시, 또는 마을]

[우편번호]

이 부동산은 _____ 군에 위치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법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B) 이 섹션의 하위섹션 (A)에 서술된 본 부동산에 위치한 모든 건물 및 기타 개량물.
- (C) 하위섹션 (A)에 명시된 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본인이 소유한 기타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한. 여기에는 (i) 해당 토지의 이익을 위해 그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모든 권한, (ii) 현재나 미래에 본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모든 로열티, 채굴권, 원유 또는 가스 권리 또는 이익 그리고 수리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한은 "본 부동산에 속한 지역권 및 부속물"이라고 불립니다.
- (D) 이 섹션의 하위섹션 (A)에 명시된 본 부동산 앞이나 옆에 위치한 길이나 도로에 있는 토지에 대해 본인이 소유한 모든 권한.
- (E) 이 섹션의 하위섹션 (A) 및 (B)에 명시된 본 부동산에 현재 위치하거나 미래에 위치하게 될 모든 고정물.
- (F) 본인이 미래에 취득하는, 이 섹션의 하위섹션 (B) ~ (E)에 명시된 모든 권한 및 부동산.
- (G) 이 섹션의 하위섹션 (B) ~ (F)에 명시된 본 부동산의 모든 교체물 또는 추가물.

본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할 채무자의 권한과 본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호할 채무자의 의무

본인은 다음을 약속합니다. (A) 본인은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B) 본인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대출업체에 담보, 부여,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C) 공적 기록부에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 부동산에 대한 미해결 유치권, 청구권 또는 부과금이 없습니다.

본인은 대출업체에 포괄적 소유권 보증을 제공합니다. 즉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단언한 본 부동산에 대해 본인 외의 사람이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출업체가 손실을 겪을 경우 본인이 그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한 권한 주장에 대응하여 본인은 본 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소유권을 변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쉬운 언어로 작성된 담보문서

본 담보문서는 범국내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부 변경이 적용된) 통일 약관과 특정 뉴욕주 요건이 반영된 비통일 약관을 조합하여, 부동산에 적용되는 통일 담보문서를 구성합니다. 본인의 약속 및 합의는 "쉬운 언어"로 서술되었습니다.

통일 약관

본인은 대출업체에 다음과 같이 약속 및 동의합니다.

1. 채무자의 상환 약속. 본인은 각각의 정기상환을 만기에 대출업체에 지불하기로 합니다. 또한 본인은 어음에 따라 기일이 도래한 모든 조기상환 수수료 및 연체수수료 그리고 본 담보문서에 따라 기일이 도래한 기타 모든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기일이 도래한 모든 채무 금액을 미국 통화로 지불하기로 합니다. 수표 또는 기타 결제수단을 통한 본인의 지불금이 미납 상태로 대출업체에 반환되는 경우, 대출업체는 다음을 통해 후속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현금, (b) 우편환, (c) 보증수표, 은행수표, 자기앞수표(예금을 보장하는 기관인 미국 정부기관, 대행기관 또는 법적 주체에서 발행한 경우) 또는 (d) 전자자금이체.

지불은 어음에 명시된 장소에서 또는 섹션 16에 의거하여 대출업체가 지정한 기타 장소에서 대출업체가 수령한 시점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업체는 섹션 2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단독 재량으로 부분상환을 수령하거나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또는 미래에 대출업체를 대상으로 모든 상계 또는 청구를 한다 해도 이는 어음 및 본 담보문서에 따라 기일이 도래한 모든 상환을 전액 실행하거나 본 담보문서에 의해 담보된 본인의 기타 약속 및 합의를 지킬 의무를 경감하지 않습니다.

2. 납부금 또는 수익금의 수락 및 총당.

(a) 부분상환금의 수락 및 총당. 대출업체는 본 섹션 2에 따라 단독 재량으로 부분상환금을 수락할 수 있고, 이를 총당하거나 보류 상태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는 부분상환금을 수락하거나, 수락 시점에 부분상환금을 총당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총당되지 않은 자금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불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출업체는 이러한 미총당 자금을 본인이 정기상환금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납부 뉴욕--단독주택--패니메이(연방 저당권 협회)/프레디맥 통일문서

양식 3033k 07/2021

7/33 페이지

완료 시 해당 정기상환금 전액이 대출에 반영됩니다. 본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충당 자금은 대출업체가 본 섹션 2 에 따라 총당하거나 채무자에게 반환합니다. 이전에 총당되지 않은 부분상환금은 압류 절차, 상환 요청, 대출조건 조정 또는 원상회복과 관련한 지불 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합계 금액에 총당됩니다. 대출업체는 본 담보문서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거나 향후 부분상환금을 반려할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을 것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정상 납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불충분한 납부금을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b) 부분상환금 및 정기상환금 총당 순서. 본 섹션 2 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업체가 납부된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면 기한이 가장 많이 지난 미납 정기상환금부터 시작하여 기한 도래 순서대로 각 정기상환금에 총당하기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음에 따라 지불해야 할 이자, 그 다음으로는 원금, 마지막으로 에스스로 항목의 순서로 총당하기로 합니다. 미납된 모든 정기상환금이 전액 지불된 경우, 남은 납부금이 있다면 연체료 및 본 담보문서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어음 및 본 담보문서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는 모든 금액이 전액 지불된 경우, 남은 납부금이 있다면 대출업체의 단독 재량에 따라 향후 정기상환금 또는 어음의 원금 잔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1 회차 이상의 정기상환금 및 정기상환금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업체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금은 해당 연체상환금 및 연체료에 총당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는 그러한 납부금을 총당할 때, 준거법에 따르기로 합니다.

(c) 자발적 중도상환. 자발적 중도상환금은 어음에 적힌 바에 따라 총당됩니다.

(d) 상환 일정의 유지. 납부금, 보험 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어음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원금에 총당해도 정기상환일이 연장 또는 연기되거나, 정기상환금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에스스로 항목에 대한 자금.

(a) 채무자의 의무, 에스스로 요건. 어음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본인은 어음에 따른 정기상환금 기한에 모든 에스스로 항목의 대금 납부에 총당할 금액("자금")을 대출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에스스로 항목이라는 용어는 위의 "본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뉴욕--단독주택--패니메이(연방 저당권 협회)/프레디맥 통일문서

양식 3033k 07/2021

8/33 페이지

용어”라는 제목의 섹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정기상환금에는 에스스로 항목의 지불에 적용될 금액이 포함됩니다.

매월 지불해야 하는 자금의 금액은 대출 기간 동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스스로 항목과 관련한 본인의 월간 상환금은 연간 상환금에 대한 대출업체의 추정치에 기반합니다. 본인은 본 섹션 3 에 의거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모든 통지의 사본을 즉각 대출업체에 보내기로 합니다.

(b) 자금의 지불, 권리 포기. 대출업체에서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준거법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 외에 본인은 대출업체에 자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은 대출업체에 대한 정기상환금에 반드시 자금을 포함해야 합니다(대출업체가 이 요건에 대한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체는 언제라도 모든 에스스로 항목 지불 의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인은 면제 대상인 모든 에스스로 항목을 해당 지불 시기에 직접 지불하기로 합니다. 대출업체의 요청이 있다면 본인은 에스스로 항목에 대한 본인의 직접 지불에 대한 증거를 대출업체가 요구한 기간 내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러한 지불을 실행하고 지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본인의 의무는 본 담보문서에 따른 채무자의 약속 및 합의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권리 포기 이후 본인이 에스스로 항목을 직접 지불할 의무를 지지만 대금을 적시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대출업체는 섹션 9 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대금을 지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본인은 섹션 9 에 의거 그러한 금액을 대출업체에 상환할 의무를 집니다.

대출업체는 섹션 16 에 따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에스스로 항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권리 포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 포기 철회 시 본인은 본 섹션 3 에서 요구하는 해당 에스스로 항목에 대한 모든 자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c) 자금의 액수. 대출업체는 RESPA 에 따라 대출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언제든지 자금을 징수 및 보유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는 지불해야 하는 자금 금액을 준거법에 따라 추산하기로 합니다.

(d) 대출업체의 의무, 자금의 충당. 대출업체는 미국 연방 기관, 대행기관, 법인 또는 어떠한 연방주택대출은행에서 예치금을 보증한 저축/은행 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기로 합니다. 대출업체는 RESPA 또는 기타 준거법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에스스로 항목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합니다. 해당 저축/은행 기관인 대출업체는 자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는 자금으로 해당 에스크로 항목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대출업체는 자금의 증액 및 감액 그리고 각 감액의 이유를 RESPA 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보여주는 자금 관련 연간 회계 정보를 무료로 본인에게 제공하기로 합니다.

대출업체는 본인에게 다음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i) 자금의 보유 또는 보관 자금을 활용한 에스크로 아이템 지불, (ii) 본인의 자금 지불에 대한 연도별 분석 작성 또는 (iii) 부과금 명세 및 청구서의 수령, 검증 및 집계. 하지만 대출업체는 상기 서비스에 대해 본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금에 대해 대출업체가 본인에게 이자를 지불하고, 준거법에서 대출업체의 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함). 대출업체는 다음 경우 외에는 자금에 대해 본인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대출업체가 에스크로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대출업체와 본인이 합의한 경우 또는 (b) 자금에 대해 대출업체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준거법에서 명시하는 경우.

(e) 자금의 조정: 자금의 잔여분 및 부족분. 에스크로에 보관 중인 자금이 남을 경우, 대출업체는 RESPA 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본인의 정기상환이 30 일 넘게 지연될 경우, 대출업체는 에스크로 항목의 지불을 위해 초과분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에 보관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업체는 본인에게 통지하고 본인은 RESPA 에 따라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대출업체에 지불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모든 담보 총액을 지불하면, 대출업체는 그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자금을 본인에게 즉각 반환하기로 합니다.

4. 부과금, 사정액 및 청구액을 지불해야 할 채무자의 의무, 유치권. 본인은 모든 세금, 사정액, 수도세, 하수처리비용, 기타 유사 부과금 그리고 본 부동산에 부과되고 본 담보문서에 비해 선순위에 있거나 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기타 부과금 및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토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본 부동산의 임차인일 경우, 토지 임대료 또는 해당 토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기일이 도래한 금액 또한 지불하기로 합니다. 또한 본인은 지역협회 비용, 요금 및 사정액도 지불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섹션 3에 명시된 대출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또는 섹션 3에 따라 대출업체에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령할 사람에게 적시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본 담보문서에 비해 선순위에 있거나 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본 부동산에 대한 모든 유치권을 즉각 지불 또는 충족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담보문서는 본인에게 우위에 있는 유치권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a) 본인이 우위에 있는 유치권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서면 합의하고 본인의 변제 방법을 대출업체가 승인하는 경우(단, 본인이 그러한 동의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함), (b) 본인이 대출업체가 단독 재량으로 결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치권에 대항하거나 유치권 집행을 방어하여 그러한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유치권 행사를 막는 경우(단, 그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에 한함) 또는 (c) 본인이 해당 유치권을 본 담보문서보다 후순위로 변경한다는 합의를 대출업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유치권자로부터 얻어낸 경우(총칭하여 "필요한 조치"). 본 담보문서보다 우선하거나 우선순위를 획득할 수 있는 유치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적용된다고 대출업체가 판단하고 본인이 그러한 유치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대출업체는 유치권 식별 통지를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유치권을 해소시키거나 하나 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손해보험 또는 재산보험에 가입할 채무자의 의무.

(a) **보험 요건, 보장 범위.** 본인은 본 부동산에 현재 위치하거나 미래에 위치하게 될 모든 건물 및 기타 개량물을 총당하는 손해 또는 재산 보험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보험은 다음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i) 화재, (ii)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확장 보장범위"에 포함되는 위험, (iii) 대출업체가 보장을 요구하는 기타 위험(지진, 강풍, 홍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러한 보험은 대출업체가 요구하는 금액(본인부담금 포함) 및 기간이 적용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대출업체의 요건은 대출 기간 중에 변경될 수 있으며, 준거법에 명시된 최소 보장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보험을 제공해주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본인의 선택을 거부할 대출업체의 권한이 적용됩니다(이러한 권한을 불합리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b) 보험 유지 중단. 앞에서 언급한 보험 보장범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대출업체에 있는 경우, 대출업체는 대출업체의 선택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섹션 9에 따라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대출업체는 본인이 이전에 확보했으나 실효 상태가 된 보장범위에 대해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소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출업체는 특정 유형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구매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러한 보험 보장을 제공할 보험사를 단독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대출업체는 그러한 보험을 구매하기 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그러한 보험은 리스크, 위험, 책임과 관련하여 대출업체에 보호를 제공하지만, 본인, 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지분 또는 부동산의 내용물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 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단, 섹션 5(a)에서 요구하는 보장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확보된 보장범위의 보험 비용이 본인이 확보할 수 있었던 보험의 비용을 크게 초과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섹션 5 영 따라 대출업체가 본인의 보험 증권을 원상회복하거나 본 섹션 5에 따라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본인의 담보 총액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과 관련하여 지출일로부터 어음 이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대출업체가 본인에게 지불 요청을 통지할 시 해당 이자와 함께 지불됩니다.

(c) 보험 증권. 대출업체가 요구하는 모든 보험 증권 및 그 갱신 증권은 (i) 대출업체에서 보험 증권을 승인하지 않을 대출업체의 권리가 적용되고, (ii) 대출업체 보호를 위해 “표준 담보대출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iii) 대출업체를 저당권자 또는 보험금의 추가 수령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출업체는 보험 증권 및 갱신 증명서를 보유할 권리를 갖습니다. 대출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본인은 지불한 보험료 및 갱신 통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대출업체에 즉시 제공하기로 합니다.

대출업체가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본인이 부동산의 훼손 또는 멸실에 대한 보험을 어떠한 형태로든 확보하는 경우 해당 증권은 반드시 표준 담보대출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대출업체를 저당권자 또는 보험금의 추가 수령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d) 손실증명, 수익금의 사용.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본인은 보험사 및 대출업체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본인이 손실증명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업체가 손실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가 경제성 관점에서 부동산의 복구 또는 수선이 실현 가능하다고 간주하고 그러한 복구 또는 수선으로 인해 대출업체의 담보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 보험(underlying insurance)이 대출업체에서 요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보험 수익금을 부동산의 복구 또는 수선에 총당하기로 합니다.

부동산을 수선 또는 복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출업체가 보험 수익금에서 수선 또는 복구 시작에 필요한 초기 금액을 지출하기로 하되, 이때에는 대출업체에 적용되는 제약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어지는 수선 및 복구 기간 동안 대출업체는 해당 작업이 대출업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완료되었는지(대출업체가 부동산 수선인에게 요구하는 최소 자격을 충족하는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자격은 면허, 이행보증, 보험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을 점검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이러한 보험 수익금을 보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러한 점검 작업은 신속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대출업체는 수선 또는 복구의 규모, 수선 계약의 조건, 대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수선 및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험 수익금을 일시금으로 또는 진행 상황에 따라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는 이러한 금액을 본인, 부동산을 수선 또는 복구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양측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와 본인이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준거법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대출업체는 그러한 보험 수익금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을 본인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보험조정사 또는 본인이 고용하는 다른 제 3자에 대한 수수료는 보험 수익금으로 총당되지 않으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합니다.

대출업체가 경제성 관점에서 복구 또는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복구 또는 수선으로 인해 대출업체의 담보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보험 수익금은 기한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 총액에 총당하며, 총당 후 남은 초과금은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보험 수익금은 섹션 2(b)의 부분상환금 반영 순서에 따라 총당하기로 합니다.

(e) **보험 합의, 수익금 양도.** 본인이 부동산을 포기하는 경우, 대출업체는 가능한 보험금 청구 및 관련 문제를 제출, 협상,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수익금 지급 제안을 대출업체가 본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체는 해당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협상 및 합의할 수 있습니다. 30일의 기간은 통지가 제공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경우든 또는 대출업체가 섹션 26 또는 다른 방식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은 (i) 어음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미납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수익금에 대한 본인의 권리 및 (ii) 목적 부동산에 적용되는 모든 보험 증권에 따른 본인의 기타 권리(그러한 권리가 해당 부동산의 보험 범위에 적용되는 한도까지) 등을 대출업체에 이전하기로 합니다. 단, 본인이 지불한 미경과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제외합니다. 대출업체가 보험금 청구를 제출, 협상 또는 합의하는 경우, 본인은 보험금의 추가 수령인으로 본인을 포함할 필요 없이 보험 수익금이 대출업체에 직접 지불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대출업체는 보험 수익금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수선 또는 복구하거나(섹션 5(d)에 따름), 기한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어음 또는 본 담보문서에 따른 미납 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6. 사용. 본인은 본 담보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본 부동산을 점유 및 확립하고 주 거주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은 최소한 1년간 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이를 주 거주지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1년 기간은 본인이 본 부동산을 처음으로 점유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출업체가 서면으로 달리 동의한 경우, 본인은 위에 명시된 기간에 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이를 주 거주지로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업체는 합리적인 경우 외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통제할 수 없으며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본인은 위에 명시된 기간에 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이를 주 거주지로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7. 부동산의 보존, 유지관리, 보호. 점검.

본인은 본 부동산을 멸실, 훼손 또는 손상시키거나, 상태악화를 초래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기로 하고, 타인이 그와 같이 하지 않도록 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본 부동산에 거주하든 않든 간에 가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보수하기로 합니다. 대출업체가 섹션 5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수선 또는 복구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본인은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 추가적인 상태악화 또는 손상을 피하기 위해 즉시 수선을 하기로 합니다.

부동산의 훼손 또는 수용과 관련하여 보험 또는 유상수용 수익금이 대출업체에 지불된 경우, 본인은 대출업체가 부동산의 수선 또는 복구 목적으로 보험 수익금을 양도한 경우에만 부동산을 수선 또는 복구할 책임을 집니다. 대출업체는 수선 또는 복구의 규모, 수선 계약의 조건, 대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수선 및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험 수익금에서 그 대금을 일시금으로 또는 진행 상황에 따라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는 이러한 금액을 본인, 부동산을 수선 또는 복구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양측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 또는 유상수용 수익금이 부동산의 수선 또는 복구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여전히 그러한 수선 또는 복구를 완료하기로 약속합니다.

대출업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동산에 대한 출입 및 점검이 가능합니다. 대출업체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업체는 부동산 개량물 내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는 내부 점검 시 또는 그 이전에 그러한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8. 채무자의 대출 신청. 본인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대출업체에 대출과 관련하여 중대한 허위, 오도 또는 부정확한 정보나 진술을 제공한 경우(또는 대출업체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며, 여기에는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을 과장하는 것, 본인의 채무 및 부채에 대한 문서를 축소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 본 부동산을 본인의 주 거주지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에 대해 허위진술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9.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권리 보호.

(a) **대출업체의 지분 보호.** 만약, (i) 본인이 본 담보문서에서 약속 및 동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ii)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절차 또는 정부 명령이 진행되는 경우(예: 법적 파산 절차, 유언 검인, 수용 또는 몰수, 본 담보문서보다 우선하거나 우선순위를 획득할 수 있는 유치권의 집행 또는 법률이나 규정의 집행) 또는 (iii) 대출업체가 합리적인 이유에서 본인이

부동산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한 경우, 대출업체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대출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거나 적절한 모든 조치(부동산의 가치 보호 또는 감정, 방호 또는 수선을 포함)를 취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의 조치에는 (I) 본 담보문서보다 우선하거나 우선순위를 획득할 수 있는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 (II) 법정에 출두하는 것, (III) 다음을 지불하는 것. (A)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비용, (B) 부동산 점검 및 가치평가 수수료 및 (C) 파산 절차 중에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권리(담보 순위를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기타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방호 조치는 부동산 내외부 점검, 수선을 위한 출입, 자물쇠 교체, 문과 창문의 교체 또는 판자 덧대기, 파이프에서 물 빼내기, 건축물 또는 기타 법규의 위반사항 또는 위험상태 해소, 공공 서비스 연결/중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출업체는 본 섹션 9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요건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단, 준거법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인은 대출업체가 본 섹션 9에 따라 허가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b) 부동산압류 방지, 손실 완화. 본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대출업체는 부동산압류를 방지하거나 대출업체의 잠재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과 협력할 수 있으나, 준거법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출업체는 부동산압류의 대안 마련을 위해 본인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합리적인 조치(신용 보고서, 권원 보고서, 권원 보험, 부동산 가치평가, 후순위 약정, 제 3자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조치를 허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손실 완화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준거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섹션 9(c)에 적힌 바와 같이 대출업체가 지불한 뒤 본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c) 추가 담보 금액. 본인은 대출업체가 본 섹션 9에 따라 지출하는 모든 금액을 이자와 함께 대출업체에 상환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대출업체가 이러한 금액의 상환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내면 이를 대출업체에 상환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어음에 명시된 금리로 이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한 이자는 해당 금액을

대출업체가 지출한 일자부터 계산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본 담보문서로 담보되는 본인의 추가 부채가 됩니다.

(d) 임차권 조건. 본인은 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수하기로 합니다. 또한 추후 본인이 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유자가 될 경우, 임차인으로서 본인의 이해관계 및 소유자로서 본인이 가지는 이해관계는 계속 분리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대출업체가 서면으로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0. 임대료 양도.

(a) 임대료 양도. 해당 부동산을 제 3 자("임차인")가 임차, 사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가 누구에게 지불되는지에 관계없이 본인은 임대료를 대출업체에 조건 없이 양도 및 이전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대출업체에 임대료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각 임차인이 임대료를 대출업체에 지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출업체가 (i) 섹션 26 에 따라 본인에게 채무불이행을 통지하고, (ii)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대출업체에 지급하도록 통지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본 섹션 10 은 추가 담보에 한정된 양도가 아닌, 전체 양도를 구성합니다.

(b) 채무불이행 통지. 대출업체가 본인에게 채무불이행을 통지하는 경우, (i) 본인은 수취한 모든 임대료를 대출업체의 수탁자 자격으로만 보유하며, 이는 담보 총액에 충당됩니다. (ii) 대출업체는 모든 임대료를 징수 및 수취할 권리를 가집니다. (iii) 본인은 대출업체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시, 각 임차인에게 기한이 도래하고 미납된 모든 임대료를 임차인이 대출업체에 지불하도록 지시하기로 동의합니다. (iv) 본인은 각 임차인이 대출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임대료가 제대로 지불되도록 하고,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v) 준거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대출업체가 징수한 모든 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을 통제 및 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 비용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보수 및 비용, 수취인의 수수료, 수취인의 채권 프리미엄, 수선 및 유지관리 비용, 보험료, 세금, 부과금, 부동산에 대한 기타 요금, 그리고 기타 담보 총액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vi) 대출업체 또는 법적으로 지정된 수취인은

실제로 수취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설명 책임을 집니다. (vii) 대출업체는 해당 부동산의 담보 부적합성에 관한 일체의 설명 없이 수취인을 지정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용 및 관리하고 임대료 및 부동산에서 파생된 수익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c) **대출업체가 지불한 자금.** 임대료가 부동산의 통제 및 관리, 임대료 징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대출업체가 이러한 목적으로 지불한 자금은 섹션 9 에 따라 담보 총액이 됩니다.

(d) **임대료 징수에 대한 제한.** 본인은 보증금 또는 이와 유사한 예치금을 제외하고, 임대료 기한으로부터 한 달 전까지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e) **임대료의 기타 양도 금지.** 본인은 임대료에 대한 어떠한 양도에도 서명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임대료를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본 담보문서에 따른 대출업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 보증, 약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f) **부동산의 통제 및 유지관리.** 준거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대출업체 또는 준거법에 따라 지명된 수취인은 본인에게 채무불이행 통지를 제공하기 전후에 부동산에 대한 출입, 통제, 유지관리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업체 또는 준거법에 따라 지명된 수취인은 본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을 때 언제든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준거법의 준수를 전제로 합니다.

(g) **추가 조항.** 임대료의 총당은 채무불이행을 해소 또는 해제하거나 대출업체의 기타 권리 또는 해결책을 무효화하지 않기로 합니다. 본 섹션 10 은 섹션 6 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합니다.

본 섹션 10 은 담보 총액이 전액 지불된 경우 적용 종료됩니다.

11. 담보대출 보험.

(a)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대체, 손실 준비금, 대출업체 보호.** 대출업체가 대출 조건으로 담보대출 보험을 요구한 경우, 본인은 담보대출 보험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별도 지정된 납부금을 담보대출 보험료로 지불해야 하고 (i) 해당 보험을 제공하던 담보대출 보험사가 대출업체가 요구하는 담보대출 보험 보장을 어떤 사유로든 중단하거나, (ii) 대출업체가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담보대출

보험사가 더 이상 대출업체에서 요구하는 담보대출 보험 보장을 제공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인은 대출업체가 선택한 대체 담보대출 보험사에서 이전 담보대출 보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 이전 담보대출 보험에 지불한 비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담보대출증서 보험 보장이 제공되지 않고, 본인이 담보대출증서 보험의 보험료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정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 경우, 대출업체는 담보대출증서 보험 보장 대신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지불된 금액은 대출업체가 보유하고, 담보대출증서 보험으로 총당될 손실은 해당 금액으로 총당하기로 합니다. 해당 지급준비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출업체는 해당 지급준비금에 대해 본인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대출증서 보험 보장이 다시 제공 및 확보될 경우, 대출업체는 더 이상 지급준비금 관련 납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은 다시 담보대출증서 보험료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담보대출증서 보험 보장은 반드시 대출업체가 요구하는 금액 및 기간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대출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담보대출증서 보험 요건의 종료를 명시한 대출업체와 본인 사이의 서면 계약에 따라 담보대출증서 보험 요건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준거법에서 담보대출증서 보험의 종료를 요구할 때까지 담보대출증서 보험료 또는 환불 불가능한 지급준비금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대출업체는 본 섹션 11 에 명시된 방식으로 본인이 보험료 또는 지급준비금을 지불할 것을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섹션 11 그리고 담보대출증서 보험료 또는 지급준비금을 지불할 본인의 의무의 존재 또는 소멸은 어음에 명시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할 본인의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 담보대출 보험 계약. 담보대출 보험은 본인이 합의된 대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체가 입을 수 있는 특정 손실과 관련하여 대출업체에 배상합니다. 본인은 담보대출 보험 증권이나 보장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담보대출 보험사는 때때로 모든 담보대출 보험에 대한 전체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러한 리스크를 분담 또는 변경하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른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담보대출 보험사가 이용 가능한 자금 출처(담보대출 보험료로 획득한 자금을 포함할 수 있음)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결과, 대출업체, 다른 보험사, 재보험사, 기타 주체 또는 이들의 계열사는 담보대출 보험사의 리스크를 분담 또는 변경하거나 손실을 줄이는 대가로 본인이 담보대출 보험에 지불한 납부금 중 일부에서 파생된(또는 그러한 성격의)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은 (i) 본인이 담보대출 보험 또는 기타 대출 조건을 위해 지불하기로 동의한 금액에 영향을 미침, (ii) 본인이 담보대출 보험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인상시킴, (iii) 본인에게 환급받을 권리를 부여함, (iv) (수시로 개정되는) 1998 년 주택소유주보호법(12 USC § 4901 *이하 참조*) 및 같은 사안에 적용되는 추가적 또는 후속적 연방법이나 규정("HPA")에 따라 담보대출 보험과 관련하여 본인이 보유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침. HPA 에 따른 이러한 권리에는 특정 정보를 공개받을 권리, 담보대출 보험의 취소를 요청하고 취소시킬 권리, 담보대출 보험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할 권리 또는 그러한 취소나 종료 시에 받지 못한 담보대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수익금의 양도 및 총당 그리고 본 부동산의 수용, 몰수.

(a) **기타 수익금의 양도.** 본인은 모든 기타 수익금에 대한 수취 권리를 조건 없이 대출업체에 양도하며, 그러한 금액이 대출업체에 지불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b) **부동산의 훼손에 대한 기타 수익금 사용.**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 대출업체가 경제성 관점에서 그 복구 또는 수선이 실현 가능하다고 간주하고 그러한 복구 또는 수선으로 인해 대출업체의 담보의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기타 수익금을 부동산의 복구 또는 수선에 총당하기로 합니다. 그러한 수선 및 복구 기간 동안, 대출업체는 해당 작업이 대출업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완료되었는지(대출업체가 부동산 수선인에게 요구하는 최소 자격을 충족하는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자격은 면허, 이행보증, 보험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을 점검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이러한

기타 수익금을 보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점검 작업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출업체는 수선 또는 복구의 규모, 수선 계약의 조건, 대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수선 및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 대금을 일시금으로 또는 진행 상황에 따라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는 이러한 금액을 본인, 부동산을 수선 또는 복구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양측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수익금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대출업체와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준거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대출업체는 해당 기타 수익금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을 본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업체가 경제성 관점에서 복구 또는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복구 또는 수선으로 인해 대출업체의 담보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타 수익금은 기한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 총액에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초과금은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기타 수익금은 섹션 2(b)의 부분상환금 반영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니다.

(c) 부동산의 유상수용, 멸실, 기타 가치 손실에 대한 기타 수익금의 사용. 부동산의 전체 수용, 멸실, 기타 가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기타 수익금은 기한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 총액의 경감을 위해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초과금은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부동산의 일부 수용, 멸실, 기타 가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각각 "부분 평가절하"), 해당 부분 평가절하 직전의 부동산의 공정시장가격이 부분 평가절하 직전의 담보 총액 이상이라면, 본인과 대출업체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기타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 총액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충당될 기타 수익금 금액은 (i) 부분 평가절하 직전에 담보된 총액을 (ii) 부분 평가절하 직전의 부동산의 공정시장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에 기타 수익금 총액을 곱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충당 후 남은 기타 수익금은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부동산의 부분 평가절하 직전의 공정시장가격이 부분 평가절하 직전의 담보 총액에 미달한다면, 본인과 대출업체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기한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타 수익금 전액을 담보 총액의 경감을 위해 충당하기로 합니다.

(d) 반대당사자의 수익금 지급. 본인이 (i) 부동산을 포기하거나, (ii) 대출업체가 다음 문장에서 정의하는 반대당사자의 수익금 지급 제안을 본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출업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대출업체는 기타 수익금을 징수하여 기한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 총액에 총당하거나, 부동산의 복구 또는 수선에 총당할 권한을 가집니다. "반대당사자"란 본인에게 기타 수익금을 지불해야 하는 제 3 자 또는 기타 수익금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소할 권리를 가진 상대방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e)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본 부동산의 몰수를 요구하거나 본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이해관계 또는 본 담보문서에 따른 권한의 상당한 감소를 요구하는 소송 또는 기타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경우 본인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몰수"란 본 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없애는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법적 명령 또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본인은 그러한 채무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한이익상실(아래 섹션 26(a)에서 정의)이 발생한 경우, 몰수 또는 본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이해관계 또는 본 담보문서에 따른 권한의 상당한 감소를 배제하는 (대출업체의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법적 판결을 통해 해당 소송 또는 법적 절차가 기각되도록 함으로써 섹션 20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원상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 손상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판정 또는 청구의 수익금을 조건 없이 대출업체에 양도하며, 이 수익금은 대출업체에 지불됩니다.

부동산의 복구 또는 수선에 총당하지 않는 모든 기타 수익금은 섹션 2(b)의 부분상환금 반영 순서에 따라 총당하기로 합니다.

13. 채무자의 의무 및 대출업체의 권한의 지속.

(a) **채무자의 의무.** 대출업체는 본인 그리고 채무자 이해관계 승계인이 어음 또는 본 담보문서에 따라 기일이 도래한 원금 및 이자의 정기 지급을 지연 또는 금액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업체가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 그리고 채무자 이해관계 승계인은 여전히 어음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완전한 의무를 집니다.

대출업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채무자 이해관계 승계인에 대한 상기 지연 또는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어음 또는 본 담보문서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출업체는 채무자 이해관계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본인 또는 채무자 이해관계 승계인이 대출업체에 소송 제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출업체는 단독 재량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대출업체의 권한. 대출업체가 본 담보문서 또는 준거법에 따른 대출업체의 권한을 행사 또는 집행하지 않더라도, 대출업체는 이러한 모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며, 미래에 행사 또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i) 대출업체가 보증을 확보하거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기타 청구권, 부과금 또는 유치권에 대해 지불하거나, (ii) 대출업체가 제 3 자 또는 채무자의 지분 승계인으로부터 납부금을 수락하거나, (iii) 대출업체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납부금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대출업체는 섹션 26 에 의거해 어음 및 이 담보문서에 따라 미납 상태인 금액을 즉시 전액 지불하도록 본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14.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의 권한 또는 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의 의무. 두 명 이상이 채무자로서 본 담보문서에 서명하는 경우, 이들 각각은 본 담보문서에 포함된 채무자의 모든 약속 및 의무를 완전히 지킬 의무를 집니다. 대출업체는 본 담보문서에 따른 대출업체의 권한을 본인 각각을 대상으로 또는 본인 모두를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들 중 누군가가 담보 총액의 전부를 지불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음에 서명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그러나 본인들 중 한 명이 어음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은 (a) 본 담보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담보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대출업체에 이전하기로 하고, (b) 본 담보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관련 불완전 권리(배우자 사망시 상속권, 주택압류 면제권 등)를 포기하기로 하고, (c) 본 담보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타 기부금, 임대료, 기타 수익을 대출업체 양도하기로 합니다. 다만, (d) 담보 총액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지불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 아울러 그 사람은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에 따른 그 사람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대출업체가 어음 또는 본 담보문서의 조건과 관련한 합의 사항의 연장, 변경 또는 조정에 대해 다른 사람과 합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섹션 19 에 의거하여, 본 담보문서에 따른 본인의 권한 또는 의무를 서면으로 승계하고 대출업체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받은 사람은 본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며 본 담보문서에 명시된 본인의 모든 약속 및 합의를 준수할 의무를 집니다. 대출업체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담보문서에 따른 본인의 의무와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15. 대출 비용.

(a) **세금 및 홍수범람원 판정 수수료.** 준거법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업체는 본인에게 (i) 본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업체가 이용한 독립적인 부동산세 확인 또는 보고 서비스에 대한 일회성 요금 및 (ii) (A) 홍수 지역 판정, 인증, 추적 서비스에 대한 일회성 요금 또는 (B) 홍수 지역 판정 및 인증 서비스에 대한 일회성 요금 및 그러한 판정 또는 인증에 합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재조정(remapping) 또는 유사한 변경 발생 시 후속 요금 등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홍수범람원 판정과 관련하여, 본 대출 기간 중 언제라도 연방재난관리청 또는 그 후속 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을 집니다.

(b) **채무불이행 비용.**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대출업체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권리 보호를 위해 본인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이용한 서비스의 수수료를 본인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비용, (ii) 부동산 점검, 가치평가, 중재, 손실 완화 수수료, (iii) 기타 관련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c) **수수료의 허용 가능성.** 기타 모든 수수료와 관련하여, 대출업체가 본인에게 특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담보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대출업체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대출업체는 본 담보문서 또는 준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d) **초과징수 환급.** 준거법에서 대출 비용의 상한을 정하는 경우, 대출과 관련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이자 또는 기타 대출 비용이 최종적으로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i) 그러한 대출 비용은 허용된 상한까지 인하되며, (ii)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여 이미 징수된 금액은 본인에게 환급됩니다. 대출업체는 해당 환급금을 본 어음에 따라 본인이 상환해야 하는 원금 잔액에 충당하거나, 본인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원금 잔액에 충당하여 원금이 감소한 경우, (어음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부분 중도상환으로 취급됩니다.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환급금의 직접 지불을 수락하는 것은 해당 초과징수로 인해 본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소송권의 포기를 구성합니다.

다른 본인의 정기상환금 및 기타 금액 징수, (b) 기타 담보대출 서비스의 제공 의무 수행, (c) 대출업체를 대리하여 어음, 본 담보문서, 준거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관계된 권리와 권한을 가집니다. 대출 관리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대출 관리회사의 이름과 주소, 납부금 지불 주소, 서비스 제공 이전 통지와 관련하여 RESPA 및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명시한 변경 통지가 서면으로 본인에게 제공됩니다.

23. 불만 통지. 대출업체 또는 본인이 위반 혐의를 (섹션 16에 의거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기 통지 이후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할 때까지, 대출업체 및 본인은 (a)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에 의거한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본 담보문서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b) 상대방 당사자가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에 따른 의무를 전혀 완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소송 또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기존 소송(집단소송 등)에 합류하거나 합류 처리될 수 없습니다. 준거법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기해야 할 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본 섹션 23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19에 따른 불이행 통지가 이루어지면 본 섹션 23의 통지 및 시정조치 기회 조항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본 섹션 23에 따른 모든 권한은 준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4. 유해물질.

(a) 정의. 본 섹션 24에서 언급하는 용어 (i) "환경법"이란 건강, 안전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권의 준거법을 의미하고, (ii) "유해물질"에는 (A) 환경법에서 독성이 있거나 유해 물질, 오염 물질 또는 폐기물로 정의하는 물질 및 (B) 휘발유, 등유, 기타 가연성 또는 독성 석유 제품, 독성 살충제 및 제초제, 휘발성 용매, 석면 또는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는 물질, 부식성 물질 또는 제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고, (iii) "환경 정화"에는 환경법에 정의된 대응 조치, 개선 조치, 제거 조치가 포함되고, (iv) "환경 조건"이란 환경 정화 조치를 야기, 유도, 촉발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b)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본인은 부동산 위에 또는 그 내부에 유해물질의 존재, 사용, 배출, 저장, 방출을 야기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며, 유해물질을 방출하겠다고 위협하지 않기로 합니다. 본인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i) 환경법 위반, (ii) 환경 조건의 형성 또는 (iii) 유해물질의 존재, 사용 또는 방출로 인해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거나 다른 자가 하도록 허락하지 않기로 합니다. 앞의 두 문장은 일반적인 거주와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는 소량의 유해물질(소비재의 유해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부동산에 존재, 사용 또는 저장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통지, 개선 조치.** 본인은 대출업체에 다음 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i) 본인이 인지한 부동산 및 유해물질 또는 환경법과 관련된 정부 또는 규제 기관 또는 민간 기관에 의한 조사, 청구, 요구, 소송, 기타 조치, (ii) 유해물질의 유출, 누출, 배출, 방출 또는 방출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 상태, (iii)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존재, 사용 또는 방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태. 본인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제거 또는 기타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부 또는 규제 기관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환경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개선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합니다. 본 담보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대출업체에 환경 정화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5. 채무자가 전자서명한 전자어음. 본 대출에 대한 부채를 증명하는 어음이 전자어음인 경우, 본인은 대출업체에 다음을 인정 및 진술합니다. 본인은 (a) 종이 어음 서면에 직접 서명하는 대신 본인이 선택한 전자서명("채무자의 전자서명")으로 전자어음에 서명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 및 의도했으며, (b) 채무자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어음에 서명한다는 명시적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c) 채무자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어음에 서명함으로써 전자어음의 조건에 따라 전자어음에서 증명하는 부채를 상환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d) 채무자의 전자서명으로 전자어음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이 전자어음의 조건에 따라 전자어음에서 증명하는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의도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어음에 서명했습니다.

표준 외 약정 사항

또한 본인은 대출업체에 다음과 같이 약속 및 동의합니다.

26. 채무자가 약속 및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출업체의 권한

(a) **채무불이행 통지.** 본 담보문서의 섹션 19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 26(a)의 하위섹션 (i), (ii), (iii)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대출업체는 어음 및 본 담보문서에서 그 시점에 여전히 미지불 상태인 금액의 즉각적인 전액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는 추가적인 지불 요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는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본 섹션 26에 따라 즉각적인 전액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i) 담보 총액의 지불 기한이 도래했을 때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여, 본인이 본 담보문서 또는 어음에서 한 약속 또는 합의를 지키지 못했음(본인이 본 담보문서에서 한 약속 또는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는 위의 "본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정의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ii) 본 담보문서의 섹션 16에 명시된 방식으로 대출업체가 다음 사항이 서술된 채무불이행 통지를 본인에게 보냈음.

(aa) 본인이 지키지 못한 약속 또는 합의.

(bb) 그러한 채무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해 본인이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

(cc) 본인이 채무불이행 시정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일자. 해당 일자 는 통지가 이루어진 일자로부터 최소 30일 후(또는 준거법에서 달리 명시한 기간)여야 합니다.

(dd) 본인이 통지에 명시된 일자까지 채무불이행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체는 즉각적인 전액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업체 또는 다른 사람이 압류 및 매각 방식으로 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

(ee) 본 담보문서의 섹션 20에 명시된 조건들을 본인이 충족하는 경우, 본인은 대출업체에 의한 본 담보문서 집행을 중단하고, 어음 및 본 담보문서가 마치 즉각적인 전액 지불이 전혀 요구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

(ff)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모든 소송에서 어음 및 본 담보문서에서의 본인의 약속 및 합의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또한 본인이 활용 가능한 기타 항변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

(iii) 본인이 대출업체의 통지에 명시된 채무불이행을 그 통지에 명시된 일자까지 시정하지 않았음.

(b) 기한이익상실, 압류, 비용. 대출업체가 즉각적인 전액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업체는 본 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모든 나머지 권한을 취득하고 본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을 통해 대출업체 또는 다른 사람이 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 및 매각”이라 불립니다. 압류 및 매각에 관한 모든 소송에서 대출업체는 모든 비용 및 지출 그리고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추가적인 수당을 징수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금액은 (i)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비용, (ii) 부동산의 점검 및 가치평가 수수료 및 (iii)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업체의 지분 및 본 담보문서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비용을 징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27. 본 담보문서를 해제할 대출업체의 의무. 대출업체가 어음 및 본 담보문서에 따라 기일이 도래한 모든 금액을 지불받으면, 대출업체는 본 담보문서가 충족되었음을 명시하는 증서를 전달함으로써 본 담보문서를 해제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그러한 해제를 적절한 공식기록에 기록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대출업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은 본 담보문서의 해제와 관련한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대출업체는 본인이 그러한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수수료가 제 3 자에게 지불되고 해당 수수료의 부과를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8. 뉴욕주 유치권법에 대한 합의. 뉴욕주 유치권법 섹션 13의 신탁기금 조항에 따라 본인은 대출업체가 본인에게 대출해주는 모든 금액을 수령하기로 합니다. 즉 본인은 (a) 신탁기금으로서 어음에 따라 대출업체로부터 수령하는 그리고 수령할 권한이 있는 모든

금액을 보유하고 (b) 이러한 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개량 비용"(뉴욕주 유치권법 섹션 13에서 정의) 지불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신탁기금으로서 이러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본 부동산에 위치한 건물 또는 기타 개량과 관련하여 본인은 상기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본 섹션 28에 명시된 방식으로 사용할 특별한 책임을 집니다.

29. 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진술 [해당되는 경우 체크].

- 본 담보문서는 1인 또는 2인 가족 주거지로서 개량됐거나 개량될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 본 담보문서는 총 6개를 초과하지 않는 가호(각 가호는 별도의 취사설비를 갖추고 있음)를 포함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구조물로서 주로 개량됐거나 개량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 본 담보문서는 위에 서술된 방식으로 개량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본 담보문서 그리고 본인이 서명하고 함께 기록한 추가조항에 포함된 약속 및 합의를 수용 및 동의합니다.

서명인:

_____ (인)
- 채무자

_____ (인)
- 채무자

_____ [승인을 위해 이 선 아래는 비워두십시오] _____